

# 인천항보안공사 항만보안요원(특수경비원) 채용 공고

역량 있는 직원을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월 16일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부문		지원 자격
모집직종	모집인원	
특수경비직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1명)  임용대기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병역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li><li>•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li><li>• 연령 :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li><li>• 신체조건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팔다리가 완전하고, 양쪽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이상인 자</li><li>- 입사지원 시 시력 측정 결과 제출(병원 측정 결과)</li></ul></li><li>•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2조(채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li><li>•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li></ul>

\* 임용대기자는 종합성적 고득점 순에 따라 임용 예정이나, **특수경비원 자격 (신입교육 이수자)**이 있는 경우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우선 임용될 수 있음

\* 임용대기자는 합격일(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함

## 2. 담당업무

구분	주요업무	비고
특수경비원 (무기계약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차량의 출입통제 및 검색 업무</li><li>• 기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항만보안업무 등</li></ul>	

##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채용의 제한)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징계면직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신원조회 결과 범죄경력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국가중요시설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9.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 3. 근무조건

구분	특수경비원(무기계약직)	비고
근무지역	• 인천 내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근무지는 근무배치계획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근무형태	• 4조 1일 3교대제 또는 주간조 근무	근로계약에 따름
근무내용	•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차량의 출입통제 및 검문 검색 등	
계약기간	•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함	
보수 및 복리후생	• 연간 약 3,100만원 수준 (4조 3교대 기준) * 근로일수 및 근로형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대보험 적용, 퇴직금 별도, 기타 근로기준법상 지급 수당 지원 • 건강검진 실시, 체육시설 운영 등	

## 4. 전형방법 및 전형일정

### □ 전형방법

구분	전형내용	비고
1차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시자의 자격조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적격·부적격 여부 판단)</li> </ul> </li> </ul>	합격 시 2·3차 전형 응시
2차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력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우 악력,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lt; 1km(남) / 700m(여) &gt;</li> <li>세부 배점기준 「체력측정 평가 기준표」 참조</li> <li>체력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면접응시 불가</li> </ul> </li> </ul>	체력측정은 코로나19 전염 예방에 따라 자체 측정 예정
3차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점수 평균이 60% 미만인 자 불합격</li> <li>* 면접시험 점수는 응시자별로 각 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채점점수를 합하여 평균한 점수로 한다.</li> </ul> </li> </ul>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전형합격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형결과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채용 적격자 선정 후 특경신임교육 이수, 신원조회 및 범죄 경력조회, 신체 검진결과 등에 이상이 없는 자를 전형 합격자로 선정</li> <li>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성적 후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li> </ul>	종합성적순 으로 선정 (체력30%+ 면접7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용 확정은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7조(임명) 제2항 1호 적용</li> <li>제17조(임명) 특수경비원은 임용되기 전에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li> </ol> </li> </ul>	
우대사항 및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지원 대상자(보훈)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5~10%) 전형별 부여</li> <li>장애인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가점(5%) 전형별 부여</li> </ul> <p>※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반영</p>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1차 전형(서류)	서류접수 기간	'23.01.16(월) ~ '22.01.3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감일 18:00 접수분까지 유효</li> <li>• <b>E-mail 제출 시 반드시 본인 서명 등이 포함된 하나의 스캔본(PDF)으로 제출</b></li> <li>• 최초로 접수한 입사지원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수정·재제출 불가</li> <li>• <b>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통보</b></li> </ul>
	합격자 발표	'23.01.31(화)	
2차 전형(체력)	<b>'23.02.01(수)</b>		• 10:00 ~ 12:00 (예정)
3차 전형(면접)	<b>'23.02.03(금)</b>		• 14:00 ~ 16:00 (예정)
전형합격자 발표	'23.02.08(수)		• 회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비소집	'23.02.10(금)		• 회사 및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23.02.11(토)~18(토)		
임용	'23. 2월 중		• (임용순위) 종합성적 고득점 순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교육기관·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5.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3.01.16(월)~'23.01.30(월)

※ 마감일 18:00 접수분 까지 유효함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22346)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 인천항보안공사 (경영기획팀)
- 방문접수 : '인천항보안공사' 본관 2층 (경영기획팀)
- E-mail접수 : [recruit@port.co.kr](mailto:recruit@port.co.kr)

**[이메일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

- ① (메일제목) **응시원서 제출(홍길동-인천항보안공사-특수경비원 지원)**
- ② (붙임 PDF파일명) **(홍길동-인천항보안공사-특수경비원 지원)**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PC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 →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 채용사이트(워크넷, 잡코리아 등)를 통한 즉시 지원 시 파일열람이 불가능 하거나 지원서 양식이 달라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6. 제출서류

### □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 해당 양식은 회사 홈페이지(www.port.c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양식) 1부
- 시력 측정 결과 1부 (병원(필수) 시력 측정 후 결과 제출)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사본(이수증 유효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청 발급)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한함

※ 서류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채용 FAQ(채용 관련 서류) 참고

### □ 전형 합격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역 기재분)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7. 기타 유의사항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 ① “추가항목” :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  
확인란  ⇨  반드시 체크
  - ② “취업보호 대상여부” :  장애대상  보훈대상  
확인란  ⇨  반드시 체크 (해당자에 한함)
  - ③ “병역사항” : 군필여부 ⇨ 육,해,공군 등 해당분야 기재  
예) 필(육군)

④ 모든 확인란 체크 박스 “□”는 해당 시  반드시 체크

⑤ 항목 모두 기재 후 확인란 □ ⇨  반드시 체크

○ 자기소개서

① 자기소개서 항목 모두 기재 후 확인란 □ ⇨  반드시 체크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① 동의여부  체크 후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 서명 누락 시 입사서류 접수하지 않음 유의

○ 입사지원서 양식 내 ‘자격사항’ 란 기재 시 소유 자격증 모두 기재, ‘경력사항’ 란 기재 시 경력사항 모두 기재

○ ‘블라인드 채용’ 기반에 따라 학교명, 가족관계 등 지원서 상에 요구되지 않는 정보 작성 금지

○ 입사 시 일체의 제출서류 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허위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소정양식 미사용, 증명서 위·변조,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합격취소, 계약해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인천항보안공사의 결정에 따라야 함

- **공사 응시서류 서식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특히,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최종 합격 통지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발견, 채용신체검사 미달 등의 사유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처리 됨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요청시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한 후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우리기관은 '블라인드 채용' 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되고 있음

구분	수집(활용) 목적	정보취득시점
시력 측정 결과지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입사지원 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채용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	
경력증명서	·특수경비업무 종사 만료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 확인(대상자 한함)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이수증	·특정 신입교육이수 여부 확인	
보훈/장애 증명서	·채용전형별 가점 부여 확인	
기본상세증명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동의서	·결격사유(국가중요시설 출입) 확인	최종합격 시
각종 서약서	·회사 규정준수 관련 서약	
주민등록등(초)본	·본인확인 및 군경력 확인 여부 ·수당 지급 여부 확인	
최종학력증명서	·통계 데이터 자료 수집 등	

- 입사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공고할 수 있음
- 전형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경영기획팀 032) 890 - 8331, 8361

2023. 1.

##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인천항보안공사 체력측정 평가기준표

## ■ 좌우악력

○ (남자) 좌우악력

구분	점 수					
	A(10)	B(8)	C(6)	D(4)	E(2)	F(0)
Kg	54이상	53~51	50~48	47~45	44이하	미실시

○ (여자) 좌우악력

구분	점 수					
	A(10)	B(8)	C(6)	D(4)	E(2)	F(0)
Kg	34이상	33~31	30~29	28~27	26이하	미실시

## ■ 윗몸 일으키기

○ (남자) 윗몸 일으키기

연령	점 수					
	A(10)	B(8)	C(6)	D(4)	E(2)	F(0)
~ 49세	50회이상	49~45회	44~35회	34~25회	24회이하	미실시
50세 ~ 54세	45회이상	44~40회	39~30회	29~20회	19회이하	미실시
55세 ~ 60세	40회이상	39~35회	34~30회	29~20회	19회이하	미실시

○ (여자) 윗몸 일으키기

연령	점 수					
	A(10)	B(8)	C(6)	D(4)	E(2)	F(0)
~ 49세	40회이상	39~35회	34~30회	29~20회	19회이하	미실시
50세 ~ 54세	35회이상	34~30회	29~25회	24~20회	19회이하	미실시
55세 ~ 60세	30회이상	29~25회	24~20회	19~15회	14회이하	미실시

■ 1Km/700m 오래달리기

○ (남자) 1Km 오래달리기

연령	점 수					
	A(10)	B(8)	C(6)	D(4)	E(2)	F(0)
~ 29세	4분20초 이내	4분21초 ~ 4분35초	4분36초 ~ 5분00초	5분01초 ~ 5분20초	5분21초 이후	중도포기
30세 ~ 39세	4분30초 이내	4분31초 ~ 4분45초	4분46초 ~ 5분00초	5분01초 ~ 5분30초	5분31초 이후	중도포기
40세 ~ 49세	4분40초 이내	4분41초 ~ 5분00초	5분01초 ~ 5분20초	5분21초 ~ 5분40초	5분41초 이후	중도포기
50세 ~ 54세	4분55초 이내	4분56초 ~ 5분10초	5분11초 ~ 5분25초	5분26초 ~ 5분50초	5분51초 이후	중도포기
55세 ~ 60세	5분00초 이내	5분01초 ~ 5분20초	5분21초 ~ 5분40초	5분41초 ~ 6분00초	6분01초 이후	중도포기

○ (여자) 700m 오래달리기

연령	점 수					
	A(10)	B(8)	C(6)	D(4)	E(2)	F(0)
~ 29세	3분50초 이내	3분51초 ~ 4분05초	4분06초 ~ 4분30초	4분31초 ~ 4분50초	4분51초 이후	중도포기
30세 ~ 39세	4분00초 이내	4분01초 ~ 4분15초	4분16초 ~ 4분40초	4분41초 ~ 5분00초	5분01초 이후	중도포기
40세 ~ 49세	4분10초 이내	4분11초 ~ 4분25초	4분26초 ~ 4분50초	4분51초 ~ 5분10초	5분11초 이후	중도포기
50세 ~ 60세	4분20초 이내	4분21초 ~ 4분35초	4분36초 ~ 5분00초	5분01초 ~ 5분20초	5분21초 이후	중도포기

[비고]

1. 체력측정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0점, 3종목 합산 12점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측정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사장이 정한다.
3. 1Km/7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